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60 호 2024. 6. 27.(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52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53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54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34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3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35호[울산광역시 북구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31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36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39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규칙 제37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53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308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 70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33호[도시관리계획(연암지구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8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35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36호[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9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37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99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943호[공고]..... 10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956호[공시송달공고]..... 101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공고 제2024-6호[울산광역시 북구 도서관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2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복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복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 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5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제문화국·행정지원국·복지환경국·안전건설국”을 “경제문화국·행정지원국·복지교육국·안전건설국·공원환경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복지환경국에 두는 과)”를“(복지교육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환경국”을 “복지교육국”으로,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과, 공원녹지과”를 “도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관리,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을 “관리”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소·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① 공원환경국에는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공원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
2.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무
3. 보건 및 위생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 등에 관한 사무

제8조 앞에 “제3장 보건소·보건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

진료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진료소장”으로, “통합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1조 앞에 “제4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14조 앞에 “제5장 동”을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7조(중전의 제16조) 중 “통합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1조제2항 관련)”을 “(제12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환경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원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공원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공원환경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담당 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담당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정주무관”을 “의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 중 “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 구 일 원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정건강생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3길 5 (중산동)	농소2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	당사·어물동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대안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연암동)	북구 일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속가능한 녹지환경 조성 및 관리, 2050 탄소 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 자원순환실천 등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 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 및 국 신설(제6조, 제8조)

- 1) 복지환경국 → 복지교육국
- 2) 공원환경국 신설

나. 국 소속 부서 및 직제순서 조정

- 1)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제6조제1항)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 2) 안전건설국에 두는 과(제7조제1항)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3) 공원환경국에 두는 과(제8조제1항)
 -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다. 국 배치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 1) 복지교육국 분장사무 조정(제6조제2항)

2) 안전건설국 분장사무 조정(제7조제2항)

3) 공원환경국 분장사무 조정(제8조제2항)

라. 보건소 내 직제순서 조정

1)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진료소 순서 조정(제10조제1항, 별표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5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7% 이내	22% 이내	32.5% 이내	31.5% 이내	5.8% 이상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	100%	-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01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 반 직 계	699	-				
3급	1	1	-	-	-	-
4급	6	5	-	1	-	-
5급	41	24	3	4	2	8
6급 이하 계	651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별표2)

1) 일반직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

(가) 4급이상 : 증0.2%(1%이내 → 1.2%이내)

(나) 9급 : 감0.2%(6%이상 → 5.8%이상)

나.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별표3)

1) 4급 : 증1(5명 → 6명)

2) 6급 이하 : 감1(652명→ 651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제34조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③ 보건교육의 실시 등 ④ 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⑤ <삭제>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⑦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⑧ 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⑨ 금연을 위한 조치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삭제>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35조 같은 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제9조	
	3	건강진단 등의 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4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기예방접종 ② 임시예방접종 ③ 예방접종의 공고 ④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⑥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83조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5	감염전파의 차단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③ 예방위원의 임명 등 ④ <삭제> ⑤ <삭제> 	<p>관한 법률」 제46조</p> <p>같은 법 제47조</p> <p>같은 법 제62조</p>	
6	감염병환자에 대한 업무중사의 일시적 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7	<p>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독의무 ② 소독업의 신고 등 ③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④ 소독업무의 대행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p> <p>같은 법 제52조</p> <p>같은 법 제53조</p> <p>같은 법 제56조</p>	
8	<p>결핵예방에 관한 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핵검진 실시 ② 결핵예방접종 등 ③ 업무중사의 일시적 제한 ④ 전염성 소실 등 ⑤ 입원명령 ⑥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⑦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⑧ 부담경비 	<p>「결핵예방법」 제11조</p> <p>같은 법 제12조</p> <p>같은 법 제13조</p> <p>같은 법 제14조</p> <p>같은 법 제15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19조</p> <p>같은 법 제26조</p>	
9	< 삭제 >		
10	<p>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②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시행결과 제출 ③ 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지원 ④ 노인·장애인구강보건사업 등 ⑤ 모자구강보건관리 	<p>「구강보건법」 제5조 및 제7조</p> <p>같은 법 제8조</p> <p>같은 법 제13조</p> <p>같은 법 제15조</p> <p>같은 법 제16조</p>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1	<p>의료기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① 중앙회와 지부(분회) 설치신고</p> <p>②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및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변경신고 등 (부속의료기관 포함)</p> <p>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등</p> <p>④ 폐업·휴업의 신고</p> <p>⑤ < 삭제 ></p> <p>⑥ 업무개시명령</p> <p>⑦ 보고와 검사업무 등</p> <p>⑧ 시정명령 등</p> <p>⑨ 개설허가의 취소 등</p> <p>⑩ 과징금처분</p> <p>⑪ 의료지도원의 임명</p> <p>⑫ 청문</p> <p>⑬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p> <p>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록 등</p>	<p>「의료법」 제28조</p> <p>같은 법 제33조, 제35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제59조</p> <p>같은 법 제61조</p> <p>같은 법 제63조</p> <p>같은 법 제64조</p> <p>같은 법 제67조</p> <p>같은 법 제69조</p> <p>같은 법 제84조</p> <p>같은 법 제92조</p> <p>같은 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p>	
	12	<p>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p> <p>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p> <p>③ 청문</p> <p>④ 과징금처분</p> <p>⑤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p> <p>⑥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p> <p>⑦ 당직의료기관의 지정</p> <p>⑧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p> <p>⑨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p> <p>⑩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 지도·감독</p> <p>⑪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의 의료 기관 등의 개설·영업허가 취소·폐쇄명령 및 업무정지(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정함)</p>	<p>「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p> <p>같은 법 제35조</p> <p>같은 법 제56조</p> <p>같은 법 제57조</p> <p>같은 법 제18조</p> <p>같은 법 제31조</p> <p>같은 법 제34조</p> <p>같은 법 제35조</p> <p>같은 법 제35조의2</p> <p>같은 법 제50조</p> <p>같은 법 제55조제2항</p>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②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폐업 등의 신고 ③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보고와 검사 등 ④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시정명령 ⑤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의 취소 등 ⑥ 청문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⑧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⑨ 행정처분의 기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25조	
	14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약국의 개설등록 ② 폐업 등의 신고 ③ 의약품의 조제행위 승인 ④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⑤ 보고와 검사 등 ⑥ 업무개시명령 ⑦ 폐기명령 ⑧ 시설개수명령 ⑨ 약국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⑩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⑪ 청문 ⑫ 약사감시원의 임명 ⑬ 과징금처분 ⑭ 과태료의 부과·징수 ⑮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폐업·휴업 등 ⑯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⑰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승인 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약사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76조의3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5	의료기기의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용구의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② 보고와 검사 등 ③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④ 사용중지 명령 등 ⑤ 청문 ⑥ 과태료 ⑦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⑧ 과징금 처분 ⑨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16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②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③ 폐업 등의 신고(폐업·휴업·재개업) ④ 대마재배자의 보고 ⑤ 출입·검사와 수거 ⑥ 폐기명령 등 ⑦ 업무보고 등 ⑧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⑨ 청문 ⑩ 과징금처분 ⑪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⑫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위촉 해제 ⑬ 과태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69조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7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② 임신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③ 난임 극복 지원사업 ④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⑤ < 삭제 >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⑦ 산후조리업의 신고 ⑧ 산후조리업의 승계 ⑨ 산후조리원 보고·출입·검사 등 ⑩ 시정명령 ⑪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⑫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⑬ 과징금 ⑭ 청문	「모자보건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 삭제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3	
	18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②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③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④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⑤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⑥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⑦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⑧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⑨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⑩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치매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②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③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④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의 평가자료 제출 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⑥ 정신의료기관의 시정명령 등 처분 ⑦ 과징금 처분 ⑧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⑩ 청문 ⑪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⑫ 신상정보의 확인 ⑬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⑭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⑮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22조,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소관부서)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농수 산과)	1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의 확인	「농지법」 제24조	
	2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같은 법 제49조	
	3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같은 법 제49조의2	
	4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같은 법 제50조제1항	
	5	자경증명의 발급	같은 법 제50조제2항	
구청장 (세무2과)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구청장 (민원 지적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②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같은 법 제6조의3제4항	
구청장 (노인 장애인과)	1	<삭 제>		
	2	장애인 등록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등록증 교부 ② 장애등급의 조정 ③ 장애인증명서의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④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3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화장 신고 ②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행화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수정(별표 1)

-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권한 근거법령 현행화
- 2) 결핵예방에 관한 권한 위임사무명·근거법령 현행화

나.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수정(별표 2)

- 1) 농수산과 위임사무 신설·위임사무명 변경 및 근거법령 현행화
- 2) 세무2과 위임사무 근거법령 현행화
- 3) 노인장애인과 위임사무 중 일부 삭제

다. 근거법령 표시방식 통일(별표 1, 별표 2)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634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복지환경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중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
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
를 제12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원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보건소”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0조(중전의 제9조)의 제목 “(소장 및 하부조직)”을 “(보건소)”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4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11조 앞에 “제5장 동”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하부행정기관

별표 1의 제목 중 “(제8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 기호(□) 중 “복지환경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환경위생과”와 “자원순환과”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안전건설국 중 “공원녹지과”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건축주택과 다음에 “기호(□) 공원환경국”을 신설하고, “공원녹지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공원환경국

공원녹지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 및 녹지 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2. 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4. 녹지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의 입안 및 설치에 관한 사항 6. 가로수 식재 보호에 관한 사항 7. 구 단위 국토공원화 추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8. 국토공원사업 추진 기술지도 및 묘목, 자재 등 확보 공급에 관한 사항 9. 시민참여 녹화사업 및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10. 마을쉼터 조성 및 나무심기 사업에 관한 사항 11. 학교 주변 녹화추진에 관한 사항 12. 가로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13. 공원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시공원법에 의한 점용, 사용취소 및 감독처분 등에 관한 사항 16.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7.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영림계획의 인가 및 변경명령에 관한 사항 19. 영림계획에 의한 사업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20.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관리에 관한 사항 21. 산불방지 대책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2. 산림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 23.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4. 임목벌채 등 산림훼손 허가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5. 임산신고, 통제 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6. 지역공동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7.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28. 사망사업에 관한 사항 29. 산림동원에 관한 사항 30. 수변공원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1.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2. 수변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3. 수변공원 점용·사용 허가 및 감독처분 등에 관한 사항 34. 수변공원 내 각종행사 추진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5. 수변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조치에 관한 사항 36.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협의를 관한 사항 37. 수변공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	---

- | |
|---|
| 38. 도시 꽃단지(지방·민간·공동체 정원 등)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6.11.> |
| 3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사무 <신설 20.6.11.> |
| 40.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3.1.1.> |

별표 1의 공원녹지과 다음에 “환경위생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환경위생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4. 수도 및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배출업소의 허가·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삭제 18.7.19.> 8. 저수조청소업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개정 16.6.30.> 10. <삭제 16.6.30.> 11. <삭제 16.6.30.> 12. <삭제 16.6.30.> 13.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5. 야생생물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16. 절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17. 약수터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8. 저수조 청소업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9. 저수조 청소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0.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3.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4. 오존주의보 발령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5.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6. 배출업소 부과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7. 무허가·신고 배출업소 행정처분 사항 28.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9.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0. 생활소음, 생활악취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31.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 32.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관리 33. <삭제 18.7.19.> 34.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5.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36.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사항 37.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	--

38. 식품위생업 조례개정 등 일반사항
39. 식품접객업 (유흥, 단란, 일반등)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0.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즉석판매, 식품운반업 포함)등록 및 신고 변경에 관한 사항
41. 식품소분업·판매업·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2. 식품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사항
43. 집단급식소 신고에 관한 사항
44. 조리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45. 식품동원에 관한 사항(총무계획)
46.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7.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8.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9. 위생관련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50.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51. 식품제조업소 위생등급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52. 공중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사항
53. 공중·식품위생 관련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54.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55. 공중위생업소 등급설정에 관한 사항
56. 식품위생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7. 영양표시 조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8.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59. 공중위생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0. 공중위생업 조례개정 등 일반 사항
61. 식중독 발생에 관한 사항
62. <삭제 18.7.19.>
63. <삭제 18.7.19.>
64.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5. 식품제조 및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6.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7. 위생감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8. 공중·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9. 식품소분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0.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1. 공중·식품접객업 무허가(무신고)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2. 식품소분업 무신고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3. 식품판매업 무신고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4. 지도단속 관련 신고, 진정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75. 부정불량식품 단속, 수거, 압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76.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신설 18.7.19.>
79.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정기검사 관리 및 행정처분 <신설 18.7.19.>
80. 어린이급식관리시설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8.7.19.>

- | |
|--|
| 81.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8.7.19.>
82. 위생용품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18.7.19.> |
|--|

별표 1의 환경위생과 다음에 “자원순환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원순환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미화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소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 4.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임시적환장에 관한 사항 6.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 및 대행료 지급에 관한 사항 7. 쓰레기봉투·대형폐기물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8.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9. 환경(청소)순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활용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1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4.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5. 1회용품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6.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18.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20.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1.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에 관한 사항 22. 사업장폐기물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 24.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 포함) 기본적 처리증명 25.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6. 폐기물 처리신고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0.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1.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에 관한 사항
-------	--

별표 2의 제목 중 “(제10조 관련)”을 “(제11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을 “복지교육국장, 안전건설국장, 공원환경국장”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속가능한 녹지환경 조성 및 관리, 2050 탄소 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 자원순환실천 등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 및 국 신설(제6조, 제8조)

- 1) 복지환경국 → 복지교육국
- 2) 공원환경국 신설

나. 국 소속 부서 및 직제순서 조정(제6조, 제7조, 제8조)

- 1) 국 소속 부서 조정

- (가) 복지교육국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 (나) 안전건설국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다) 공원환경국 :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다. 구 본청 분장사무 조정(별표 1)

1) 국 소속 부서 및 직제순서 조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단위 : 명)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합계	합계		701	472	20	52	36	121(4)
	정무직		1	1				
	일반직		699	470	20	52	36	121(4)
	별정직		1	1				
정무직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699	470	20	52	36	121(4)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4	4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41	24	3	4	2	8
		행정	28	15	3		2	8
		행정/사회복지	2	2				0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간호/의료기술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	1					
의무		2			2			
시설		3	3					
농업/해양수산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6급	소계	149	108	6	11	7	17
		행정	64	48	5	1	1	9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11	3				8
		행정/사서	4				4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	2	2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9	9				
		행정/공업	4	2				2
		행정/방재안전	1	1				
		세무	3	3				
		전산	1	1				
		사회복지	3	3				
		속기	1			1		
		공업	1	1				
		농업	2	2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	2	2				
		보건진료	1				1	
		공업/환경	1	1				
		시설	13	13				
		방송통신	2	2				
		운전	3	3				
		보건/의료기술/간호	8				8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7급	<u>소계</u>	<u>227</u>	166	7	16	<u>12</u>	26	
		행정	99	73	6	1	4	15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사서	3				3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시설	4	4					
		행정/학예연구	1	1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	8	8					
		전산	2	2					
		사회복지	15	8					7
		<u>사서</u>	<u>5</u>					<u>5</u>	
		공업	3	3					
		공업/환경	2	2					
		농업	3	3					
		농업/수위/해양수산	1	1					
		녹지	5	5					
		수위	1	1					
		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의료기술	2					2	
		간호	5					5	
		보건진료	1					1	
		환경	3	3					
		시설	30	30					
		시설/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4	4					
		운전	2	2					
		전기운영	1	1					
		농림운영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8급	소계	211	126	4	19	10	52	
		<u>행정</u>	72	40	2			30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1	9					2
		행정/사서	2					2	
		<u>행정/녹지</u>	1	1					
		행정/농업	1	1					0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시설	6	6					
		<u>행정/운전</u>	3	3					
		세무	7	7					
		전산	3	2				1	
		사회복지	17	6					11
		<u>사서</u>	2					2	
		사서/공업	1					1	
		공업	6	2			1	3	
		공업/환경	2	2					
		농업/해양수산	1	1					
		녹지	3	3					
		녹지/시설	2	2					
		해양수산	1	1					
		농업	1	1					
		보건	7	3				4	
		<u>보건/의료기술/간호</u>	3					3	
		의료기술	4					4	
		<u>간호</u>	13					5	8
		시설	21	21					
		시설/전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방송통신	2	1				1	
<u>운전</u>	7	4		1	2				
방재안전	1	1							
속기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9급	소계	64	40	0	1	5	18(4)
		행정	26	13			1	12(4)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방재안전	1	1				
		세무	2	2				
		사회복지	8	6				2
		사서	3				3	
		공업	3	3				
		공업/환경	1	1				
		녹지	1	1				
		보건	2	2				
		보건/의료기술	1				1	
		시설	5	5				
		방송통신	1	1				
		별 정 직	계		1	1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701명(변동없음)

나. 기관별 정원 조정 : 변동없음

다.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별표)

1) 4급 : 5명 → 6명(증1명)

- 본청 : 서기관 증 1명

2) 5급 : 변동없음

3) 6급 : 변동없음

- 본청 : 행정·방재안전 증 1, 행정 감 1

행정·시설 증 2, 행정 감 1, 시설 감 1

4) 7급 : 225명 → 227명(증2명)

- 사업소(구립도서관) : 사서 증 2

5) 8급 : 213명 → 211명(감2명)

- 본청

- 행정 감 1

- 행정·녹지 증 1, 행정 감 1

- 행정·운전 증 1, 운전 감 1

- 보건소 : 보건·의료기술·간호 증 2, 간호 감 2

- 사업소(구립도서관) : 사서 감 1

6) 9급 : 65명 → 64명(감1명)

- 본청

- 행정·방재안전 증1

- 행정·녹지 감 1

- 사업소(구립도서관) : 사서 감 1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636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통사항 제1호란 중 나목과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복무(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	나. 국장·실장	기안				○	
	다. 과장	기안			○		

별표 1 중 기획예산실 제81호부터 제82호란 나목과 제84호란 다목, 제89호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81. 정책실명제 운영	가. (생략)	기안		○			
	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확정	기안				○	
82. 공모사업 대응전략 수립	가. (생략)	기안					○
	나. 지침작성	기안				○	
84. 공모사업 T/F팀 구성	가~나. (생략)	기안					○
	다. 추진상황 보고	기안				○	
	라. (생략)	기안					○

89. 국가균형발전 업무	나. 국가균형발전 관련 위원회 활동 자료, 동향 전파						
	(1) 정책관련 등 중요한 사항	기안				○	
	(2) (생략)	기안		○			

별표 1 중 농수산과 제51호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1. 급식센터 운영	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기안					○
	(2) 운영위원회 운영	기안		○			

별표 1의 기호(□) 중 “복지환경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환경위생과”와 “자원순환과”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안전건설국 중 “공원녹지과”를 삭제한다.

별표 1의 건축주택과 다음에 “기호(□) 공원환경국”을 신설하고, “공원녹지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공원환경국

○ 공원녹지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채
		담 당 자	팀 장	실 ·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도시공간녹화 및 녹지대업무	가. 도시녹화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녹지대 조성	기안			○		
	다. 가로수 및 녹지대·수벽·초화류 관리	기안		○			
	라. 가로수·수벽·초화류 식재	기안			○		
	마. 수목 병충해 방제	기안		○			
	바. 각종공사 지장수목 이식협의	기안		○			
2. 도시공원 관리	가. 공원정비 계획		기안		○		
	나. 공원내 각종 인·허가	기안		○			
	다. 공원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기안		○			
	라. 어린이공원·소공원 조성계획 수립 <신설>	기안					○
3.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가. 도시 숲 조성	기안			○		
	나. 도시 숲 사후관리	기안		○			
4. 녹지조성 사업 조정관리	가. 녹지조성사업 조정관리		기안			○	
	나. 녹지내 각종 인·허가	기안		○			
5. 공원녹지작업단 관리	가. 공원녹지작업단 관리	기안		○			
6. 국토공원화 사업	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7. 청사 내 조경 관리 및 타 실과 조경 협의	가. 청사 내 조경관리 및 타실과 조경 협의	기안		○		
8. 산림보호	가. 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기안		○		
	나. 병충해 방제	기안		○		
	다. 산림보호 단속	기안		○		
	라.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		기안			○
	마.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기안		○		
	바. 산림내 불법 건조물 지도단속	기안		○		
	사. 산림피해 보고	기안		○		
	아. 산림사범 단속 및 사건송치	기안		○		
	자. 산림재해 예방	기안		○		
9. 산불 예방	가. 산불예방 및 진화계획 수립		기안			○
	나.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안			○	
10. 임목벌채 및 산림형질변경	가. 임목벌채 허가(수종갱신 포함),신고	기안		○		
	나. 산지전용(협의)허가(3,000㎡ 미만)	기안		○		
	다. 산지전용(협의)허가(3,000㎡~5,000㎡)	기안			○	
	라. 산지전용(협의)허가(5,000㎡~10,000㎡)	기안				○
	마. 산지전용 허가지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 준공					
	(1) 3,000㎡ 이상	기안			○	
	(2) 3,000㎡ 미만	기안		○		
	바. 산지 전용 신고	기안		○		
	사. 산지 전용 허가 기간 연장허가	기안		○		
	아. 임산물굴취, 채취허가 및 신고	기안		○		
	자. 공사유림내 토석 채취허가	기안				○
	차. 광업권 협의	기안		○		
	카. 산지 전용허가 취소(사업자진포기 포함)	기안				○
타. 산지 전용(협의) 허가 사업중지 및 해지 명령	기안			○		
파. 산지전용 허가지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 준공	기안		○			
11. 영림기술자격증 발급	가. 영림기술 자격증 발급	기안		○		
12. 종묘생산업의 등록 및 취소	가. 종묘생산업의 등록 및 취소	기안		○		
13. 임목에 관한 사항	가. 임목에 관한 사항	기안		○		
14. 명예산림지도요원 위촉	가. 명예산림지도요원 위촉	기안		○		
15. 임업진흥촉진지역의 고시 및 관리	가. 임업진흥촉진지역의 고시 및 관리	기안		○		
16. 임업후계자, 독립가 지정 및 관리	가. 임업후계자, 독립가 지정 및 관리	기안		○		
17. 청원산림보호직원 임명	가. 청원산림보호직원 임용	기안			○	
18. 사방사업에 관한 사무	가. 사방사업에 관한 사무	기안		○		
19. 임도, 방화선	가. 임도, 방화선설치 업무	기안			○	
	나. 임도시설 관리	기안		○		
20. 임산물가공업 등록 및 관리	가. 임산물가공업 등록 및 관리	기안		○		
21. 공유림 업무	가. 공유림 관리	기안		○		
22. 산림청이외의 관리청이 작성한 국유림 영림계획, 사업신고, 임목죽	가. 산림청이외의 관리청이 작성한 국유림 영림계획의 승인 및 동의권	기안			○	
	나. 산림청이외의 관리청이 작성한 국유림에 대한 사업신고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별채업무	다. 산림청 이외의 관리청이 입목죽을 별채 하고자 한 때의 승인 또는 동의권	기안		○			
2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업무	기안		○			
24. 산림공익 근무요원 업무	가. 산림공익 근무요원 관리	기안		○			
25. 산림통계	가. 산림기본통계	기안		○			
	나. 임산물기본통계	기안		○			
	다. 임업 총조사	기안		○			
	라. 산림입지 조사 등 임업통계	기안		○			
26. 조림 및 육림, 양묘	가. 조림사업계획		기안			○	
	나. 조림 및 육림, 양묘 지도감독	기안		○			
	다. 풀베기 및 추비 사업계획	기안		○			
	라. 조림 육림에 관한 시업명령	기안		○			
27. 수변공원 조성	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보상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공사시공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라.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기안		○			
	28. 수변공원 관리	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나.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다. 시설물 배치 및 공사계획	기안			○			
라. 시설물 관리 위탁	기안					○	
마. 공원 점·사용 허가	기안		○				
바. 작업단 선발 및 배치	기안		○				
사. 유지관리 공사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아.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기안		○				
29. 도시 꽃단지(공동체 정원) 조성 계획 수립 <신설>	가. 세부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나. 업무 협조 등 일반사항	기안		○			
30. 도시 꽃단지 조성 관련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신설>	가. 추진경과 및 결과보고	기안					○
	나. 지시사항 부서 시달	기안		○			
31.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사무 <신설>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별표 1 중 공원녹지과 다음에 “환경위생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환경위생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 녹색성장 총괄업무	가. 녹색성장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2. 기후변화 대응	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그린스타트 운동 연간계획 수립	기안					○
	다.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기안		○			
	라.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안		○			
	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신 설>	기안					○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가. 과세자료 조사에 관한사항	기안		○		
	나. 조정신청 처리 및 환급	기안		○			
	다. 부과고지 결정	기안			○		
	라. 납부고지서 발부 및 고지서 송달	기안		○			
	마. 독촉고지서 발부	기안		○			
	바. 징수·감액 결정						
	(1) 징수·감액결정	기안		○			
	(2) <삭제>						
	아. 부과 징수 현황 보고						
	(1) 월·분기 보고	기안		○			
	(2) 결산보고	기안			○		
	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	기안		○			
	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해제	기안	○				
	카.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허가 및 허가 취소	기안		○			
4. 환경기술인 교육 선발	가. 환경기술인 교육 선발	기안		○			
	나. 교육 미이수자 처분	기안		○			
5. 자연보호 보전·보호에 관한 사항	가. 자연보호현장 선포기념행사	기안		○			
	나. 자연보호 교육 및 홍보	기안		○			
	다. 자연보호 정화활동	기안		○			
6. 친환경상품 구매 등에 관한 사항	가. 구매계획 작성 수립				○		
	나.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			
	다.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7. 수도에 관한 사무	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1) 지정·해제		기안		○		
	(2) 시설 개보수	기안		○			
	(3) 수질검사	기안		○			
	(4) 관리인 교육 및 건강검진	기안		○			
	나. 물수요관리목표 종합계획 시행계획	기안				○	
	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등	기안			○		
	라.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절수설비 등 관리						
	(1) 설치 결과 접수 및 확인 등 관리	기안		○			
	(2)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이행명령	기안		○			
	(3) 「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마. 저수조에 관한 사항						
	(1) 청소업 신고(변경 등) 처리	기안		○			
(2) 청소업 행정처분	기안		○				
8. 먹는물 관리에	가. 먹는 물 공동시설의 관리 및 지정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관한 사무	나. 먹는 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와 개선명령	기안		○			
	다. 먹는 샘물 또는 수처리제나 그 용기·포장 등의 압류 또는 폐기와 영업자등에 필요한 조치	기안		○			
	라. 먹는 물 관련 영업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보고·검사·수거 등	기안		○			
	마.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신고	기안		○			
	바.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 해제	기안			○		
	9.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가. 호소의 정기적 측정 및 조사	기안		○		
10. 토양환경 보전	나. 관리대상시설 또는 오염물질 처리방법의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기안			○		
	가. 토양오염 실태 조사 및 계획수립	기안			○		
	나.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기안		○			
12.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다.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 관리 및 행정조치	기안		○			
	가.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13.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가. 야생 생물 보호구역 지정·해제	기안				○
13.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나. 야생 생물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등의 협의	기안			○		
	다. 수렵면허 관리(발급, 갱신, 정지, 취소 등)	기안		○			
	라. 수렵조수 포획 승인	기안		○			
	마. 야생 생물의 수출·입, 반출입 허가	기안		○			
	바. 유해 야생 생물 포획 구제	기안		○			
	사. 야생 생물의 인공증식 허가	기안			○		
	아. 박제업자 등록 및 신고	기안		○			
	자. 야생 생물지역의 보호를 위한 출입의 제한 등	기안		○			
14. <삭 제 16.6.30.>							
15. 가축분뇨의 처리	가.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기안		○			
	다.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기안		○			
	마.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가축사육 지도단속	기안		○			
	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기안		○			
	사. 처리시설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기안		○			
	아.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변경)등록	기안		○			
	자.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16. <삭 제 16.6.30.>							
17.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시행	가.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시행		기안			○	
18.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가. 주민의견수렴 공고	기안			○		
	나. 주민의견수렴 결과 통보	기안			○		
	다. 오염도 측정	기안		○			
	라. 의견 통보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9.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사항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	기안					○
	나. 설치 및 변경허가	기안			○		
	다. 설치 및 변경신고	기안		○			
	라. 행정처분(허가취소, 폐쇄명령, 사용중지 조업정지)	기안		○			
	마. 행정처분(개선명령, 경고)	기안		○			
	바. 사건송치	기안			○		
	사. 개선완료 신고	기안		○			
	아. 검사신청	기안		○			
	자. 개선명령 연기신청	기안		○			
	차. 비정상가동 신고수리 및 검사	기안		○			
카. 배출업소 과징금 부과·징수	기안			○			
20.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	가.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1. 저유황 유류 사용·판매사업장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가. 저유황 유류사용·판매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22.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가.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기안			○		
	나.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수리	기안		○			
	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23. 악취관리	가. 악취저감 종합대책 수립	기안			○		
	나.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 지도점검	기안		○			
24.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나. 운행차 소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라. 확인검사 대행자 등록 및 취소	기안		○			
	마. 확인검사 대행자 지도점검	기안		○			
	바. 공회전 제한 지도 및 단속	기안		○			
25. 특정공사 사업장 및 생활소음 관리	가. 특정공사 사전 신고 수리	기안		○			
	나. 특정공사 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다. 소음관리	기안		○			
26. 운행차 소음검사 및 행정처분	가. 운행차 소음검사 및 행정처분	기안		○			
27.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및 행정조치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및 행정조치	기안		○			
28. 생활민원 처리	가. 생활민원 처리	기안		○			
29.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가.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기안		○			
30. 환경관련 과태료부과·징수	가.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31. 공공수역 관리	가. 공공수역 오염투기자에 대한 조치명령	기안			○		
	나. 공공수역 방제조치 대집행	기안			○		
32. 각종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	가. 각종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33.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가. 설치	기안			○		
	나. 유지관리	기안		○			
34. 실내 공기질 관리	가.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나. 실내 공기질 보고 및 검사업무	기안		○			
	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35. 확인검사 대행자 관리	가.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기안		○			
36.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가. 과태료 압류등록	기안		○			
	나. 과태료 압류해제	○					
37.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리	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 처리	기안		○			
	나. 신청기간 경과 알람(독촉장)	기안		○			
	다. 정기검사 기간경과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검명령	기안		○			
	라. 지정정비사업장 지정 및 업무정지 명령	기안		○			
38. 석면안전관리	가.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 처리	기안		○			
	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수리	기안		○			
	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감리인 지정(변경) 신고 수리	기안		○			
	라.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기안		○			
39. 석면피해구제제도	가.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신청서 수리 및 인정 여부 결정청구 접수	기안		○			
	나.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지급 및 지급청구 접수	기안		○			
40.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가.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기안		○			
	다.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기안		○			
41. 공중위생 관련업의 위생등급 조정	가. 공중위생 관련업의 위생등급 조정	기안		○			
42. 공중위생 관련업의 위생교육 관리	가. 공중위생 관련업의 위생교육 관리	기안		○			
43. 이용사·미용사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가. 이용사·미용사 면허증 발급	기안		○			
	나. 이용사·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기안		○			
	다. 결격사유 조회 <신설 18.7.19.>	기안	○				
44. 학교위생 정화구역에 따른 사무처리 (공중위생업 관련)	가. 학교위생 정화구역에 따른 사무 처리 (공중위생업 관련)	기안		○			
45. 식품위생 관련 영업	가. 유흥 및 단란주점허가 변경허가사항	기안		○			
	나. 식품접객업, 기타 식품관련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사항	기안		○			
	다. 결격사유 조회 <신설 18.7.19.>	기안	○				
46.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업의 영업자지위승계, 폐업, 재교부	가. 영업자 지위승계	기안		○			
	나. 폐업·영업신고(허가)증 재교부	기안		○			
	다. 결격사유 조회 <신설 18.7.19.>	기안	○				
47. 식품자동판매기 신고사항 변경 신고	가. 식품자동판매기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48.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위생 교육	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위생 교육	기안		○			
49. 식품위생관리인 선임신고	가. 식품위생관리인 선임신고	기안		○			
50. 조리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가. 조리사 면허증 발급	기안		○			
	나. 조리사 면허증 재발급	○					
51. 향토음식점 우수업소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향토음식점 우수업소,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52. 식품진흥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안				○	
	나. 식품진흥기금 관리			○			
53. 식품 및 첨가물제조 가공업 등록 및 변경사항	가. 등록	기안		○			
	나. 변경사항	기안		○			
54.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 및 변경사항	가.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 및 변경사항	기안		○			
55.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	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결격사유 조회 <신설 18.7.19.>	기안	○				
56. 공중위생업의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	가. 공중위생업의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57. 공중위생접객업에 관한 종합 계획수립시행	가. 공중위생접객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기안				○
58. 식품위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가. 식품위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기안				○
59. 식품공중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관리	가. 식품공중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관리	기안		○			
60.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가.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61. 집단급식소신고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신고처리	기안		○			
	나. 지도감독 등 관리에 관한사항	기안		○			
62. 기타 식품행정에 관한 사항	가. 기타 식품행정에 관한 사항	기안		○			
6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64. <삭제 18.7.19.>							
65. <삭제 18.7.19.>							
66. 공중관련 영업지도, 단속 행정처분 및 합동단속	가. 공중관련 영업지도, 단속 행정처분 및 합동단속	기안		○			
67.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가.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68.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및 행정처분	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및 행정처분	기안		○			
69. 식품위생 관련 영업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기안		○			
	나. 식품위생 위반업소 청문	기안		○			
70.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기안		○			
71. 식중독 조사관리	가. 식중독 조사관리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7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설 18.7.19.>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 설치(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기안		○			
	나.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정기검사 관리 및 행정처분	기안		○			
73. 음식문화개선사업 <신설 18.7.19.>	가. 음식문화개선사업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음식문화개선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다.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기안		○			
	라. 나트륨 줄이기 사업 추진	기안		○			
	마. 외식업소 위생등급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74.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8.7.19.>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 등 행정지원	기안		○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진실적 보고	기안		○			
	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감독	기안		○			
75.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18.7.19.>	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 신규, 변경, 폐업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위생용품 제조·처리업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보고	기안		○			
	다. 위생용품 제조·처리업 영업자 위생교육	기안		○			
76.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신설>	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계획	기안					○
	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대상 건설공사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관련 세부 사업 추진	기안		○			
77. 환경친화적자동차 <신 설>	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지도·점검	기안		○			
	나.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기안		○			
	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7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신 설>	가. 빛 방사 허용기준 확인 등 지도·점검	기안		○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별표 1 중 환경위생과 다음에 “자원순환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원순환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 청소업무 종합계획	가. 청소업무종합계획		기안				○
2. 생활폐기물 관리	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 지정	기안			○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조정		기안				○
	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 부과	기안		○			
3. 환경공무직 관리 <개정 21.6.24>	가. 환경공무직 복무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환경공무직 노사 관련 업무		기안		○		
	다. 환경공무직 신규채용 (1) 종합계획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 당 자	팀 장	실 ·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2) 세부계획	기안			○		
	(3) 채용에 관한 일체서류 관리	기안		○			
4. 종량제쓰레기 봉투관리	가. 종량제쓰레기봉투제작	기안		○			
	나. 종량제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기안		○			
	다. 종량제쓰레기봉투판매소 지도점검	기안		○			
	라. 종량제쓰레기봉투판매 정산	기안		○			
5. 일반청소업무	가. 청소차관리	기안		○			
	나.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및 관리	기안		○			
	다. 가로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기안		○			
	라. 환경미화용 청소도구 관리	기안		○			
	마. 대청소 실시 권장 및 조치	기안		○			
6.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가.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실적 및 분석	기안		○			
	나. 과제추진실적 및 분석	기안		○			
	다. 자원재활용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라. 재활용투자계획 수립		기안		○		
	마. 자원재활용 추진 관리 및 평가	기안		○			
7. 공동주택의 신축, 준공 시 재활용품 보관 시설 및 용기 적정 검토	가. 공동주택신축준공시 보관시설, 보관용기 개수 적정 상태 여부 검토	기안		○			
	나. 재활용품 보관시설 및 용기 비치상태 지도점검	기안		○			
	다. 공동주택 재활용추진관리 및 평가	기안		○			
8.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포장폐기물 다량 발생 억제	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수립	기안		○			
	나.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사업장 지도 점검	기안		○			
	다. 미이행업소 행정조치	기안		○			
	라.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포장폐기물 다량 발생억제 추진관리 및 평가	기안		○			
9. 자원재활용 주민교육 및 홍보	가. 자원재활용 주민교육 계획수립	기안			○		
	나. 주민교육홍보 및 접수	기안		○			
	다. 교육 및 견학장소 강사의뢰	기안		○			
	라. 주민실비보상금 지출	기안		○			
	마. 주민교육 추진관리 및 평가	기안		○			
10. 공공기관 폐기물 재활용추진관리	가. 공공기관 폐기물재활용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기관 폐기물재활용 추진관리 및 평가	기안		○			
11. 권리의무승계신고	가. 권리의무승계신고	기안		○			
12.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추진	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기안			○	
	나. 세부추진 계획수립	기안		○			
1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조정		기안			○	
	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위탁징수 협약	기안		○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기안		○			
1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리	가. 대행구역조정 및 계약 관리	기안				○	
	나. 지도점검 및 조치	기안		○			
15.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가. 분리수거 계획수립	기안		○			
	나. 분리수거구역 조정	기안		○			
	다. 주민홍보 및 교육	기안		○			
1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관리	가.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기안		○			
	나. 감량의무이행 신고수리	기안		○			
17. 폐기물처리업 허가	가. 폐기물처리업허가	기안			○		
	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다. 폐기물처리업 지도감독	기안		○			
	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재교부	기안		○			
	마.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정지명령사항		기안		○		
18. 폐기물처리 및 관리	가.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및 지도감독	기안		○			
	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대집행		기안			○	
	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장비 및 인력관리	기안		○			
	라.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비 과징 업무 및 지도감독	기안		○			
	마. 대형구역조정 및 계약관리	기안		○			
19.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수리	기안		○			
	나.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기안		○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지도점검	기안		○			
20.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추진 지도 점검	가. 폐기물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추진 지도점검 계획수립		기안	○			
	나. 폐기물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지도점검	기안		○			
	다. 폐기물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추진관리 및 평가	기안		○			
21. 차량운행증발급	가. 차량운행증 발급(수집·운반)	기안		○			
22.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	가. 폐기물불법투기단속계획수립	기안		○			
	나. 과태료부과	기안		○			
23.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가. 폐기물처리신고에 대한 다른 법 저촉사항 검토	기안		○			
	나. 폐기물처리신고에 대한 실태조사	기안		○			
24. 폐기물처리 신고자 지도점검	가. 폐기물처리신고자 지도점검 계획수립	기안		○			
	나. 폐기물처리신고자 지도점검	기안		○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변경승인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에 대한 다른 법 저촉사항검토	기안		○			
	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기안		○			
26.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가. 조사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	기안		○			
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에 대한 다른 법 저촉사항 검토	기안		○			
	나. 설치·변경신고	기안		○			
2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	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신고수리	기안		○			
29.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	가. 폐기물처리시설지도·점검 계획수립	기안		○			
	나.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	기안		○			
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운영	가. 산정 및 납부비용 결정		기안				○
	나. 징수결의		기안	○			
	다. 납부고지		기안	○			
	라. 체납관리		기안	○			
	마. 비용관리		기안	○			
31. 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가. 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 실태조사 및 신고수리	기안		○			
32.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	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신고 수리	기안		○			
	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신고업소 지도점검	기안		○			
33.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신고 관리	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수리	기안		○			
	나. 건설폐기물배출업소지도점검	기안		○			
34.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가. 폐기물불법소각단속계획수립	기안		○			
	나. 폐기물불법소각단속 및 과태료부과	기안		○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국별 부서 편제 등을 정비하고, 결재권의 배분 원칙에 따라 세부사무별 전결권자를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신설 및 명칭 변경(별표 1)

- 1) 공원환경국 신설
- 2) 복지환경국 → 복지교육국
- 3) 국 소속부서 변경

- 복지교육국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 안전건설국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공원환경국 :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나. 전결권 재조정(별표 1)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김경희

2024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3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별표 2의 학예연구직렬의 학예일반직류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가목 시설직렬의 건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시설	건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13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1.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1.>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시표 ()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인)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시연도 및 회수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시번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군		① ①	
④ 주 소						(사진부착) (3.5cm×4.5cm)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①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임용권자)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 (8) 공무원경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연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희망 지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응시수수료) ① ~ ②(생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직공무원</p> <p>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3조제4항, 제5항 및 제16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직렬</th> <th style="width: 10%;">직류</th> <th style="width: 80%;">연구관·연구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예연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학예일반</td> <td>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u>문화재관리학</u>,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td> </tr> </tbody> </table> <p>[별표 5의2]</p> <p>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13조제1항 관련)</p> <p>1. (생략)</p>	직렬	직류	연구관·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u>문화재관리학</u> ,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이하 생략)			<p>제5조(응시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u></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직공무원</p> <p>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3조제4항, 제5항 및 제16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직렬</th> <th style="width: 10%;">직류</th> <th style="width: 80%;">연구관·연구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예연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학예일반</td> <td>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u>국가유산관리학</u>,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td> </tr> </tbody> </table> <p>[별표 5의2]</p> <p>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13조제1항 관련)</p> <p>1. (현행과 같음)</p>	직렬	직류	연구관·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u>국가유산관리학</u> ,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이하 생략)		
직렬	직류	연구관·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u>문화재관리학</u> ,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이하 생략)																			
직렬	직류	연구관·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u>국가유산관리학</u> ,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이하 생략)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생략)						
시설	건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 술재(보수기 술재(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 술재(보수기 술재(9)	문화재수리기 술재(보수기 술재(6)	문화재수리기 술재(보수기 술재(3)	문화재수리기 술재(보수기 술재(3)
		디자인	건축사(5)	건축사		
(이하생략)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13조제8항 관련)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생략)			
시간선택제임기제	라	급	1. <u>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 2. ~ 3. 생략.
			(생략)
한시임기제	6	호	1. 생략 2. <u>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 3. ~ 4. 생략
			1. 생략 2. <u>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u> 3. ~ 4. 생략
			1. <u>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 2. ~ 3. 생략
			(생략)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 5. (생략)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생략)						
시설	건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 기술재(보수 기술재(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 기술재(보수 기술재(9)	국가유산수리 기술재(보수 기술재(6)	국가유산수리 기술재(보수 기술재(3)	국가유산수리 기술재(보수 기술재(3)
		디자인	건축사(5)	건축사		
(이하생략)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13조제8항 관련)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생략)			
시간선택제임기제	라	급	1. <u>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 2. ~ 3. 현행과 같음
			(생략)
한시임기제	6	호	1. 생략 2. <u>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u> 3. ~ 4. 현행과 같음
			1. 생략 2. <u>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 3. ~ 4. 현행과 같음
			1. <u>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 2. ~ 3. 현행과 같음
			(생략)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 5. (현행과 같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 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생 략)	
	라 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 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 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 시 임 기 제	(생 략)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 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생략)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 5. (생략)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응시 번호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복수 국적		
전 화	휴대 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응시원서 작성요령

종 류	임용 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현행과 같음)	
	라 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 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 등학교 졸업자등
한 시 임 기 제	(현행과 같음)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 등학교 졸업자등	

- ※ 비고
1.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 4.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응시 번호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복수 국적		
전 화	휴대 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 5. (생략)
-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생략)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생략)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 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 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합 판 5매가 소요됨)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현행과 같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현행과 같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현행과 같음)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현행과 같음)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 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 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합 판 5매가 소요됨)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등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5조제3항)
- 용어변경 : 문화재 → 국가유산 등(안 별표2, 별표5의2)
-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5의3)
- 응시원서 상의 '탈모' 용어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
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3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 6와”를 “별표 6과”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7명 이하”를 “8명 이하”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소통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감사담당 업무소관”을 “감사업무 소관”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과 제4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분장조정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국 주무부서장(경제일자리과장,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으로”를 “기획예산실로”로 한다.

제6조제3항과 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을 “기획예산실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별표 1】

복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본청 합계			472		
기획예산실	계		22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1	
		6급	7	행정6, 행정/시설1	
		7급	10	행정9, 시설1	
		8급	4	행정4	
		9급	0		
경제 문화국	국 합계		86		
	경제 일자리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6
			7급	8	행정7, 공업1
			8급	2	행정2
			9급	2	행정2
	미디어 정보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5	행정2, 행정/임기제 행정1, 전산1, 방송통신1
7급			7	행정1, 행정/임기제 행정2, 전산2, 방송통신2	
8급			4	행정/전산1, 전산2, 방송통신1	
9급	1		방송통신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경제 문화국	문화 체육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5	행정3, 행정/임기제 학예연구1, 시설1
			8급	6	행정3, 행정/시설2, 보건1
		9급	0		
경제 문화국	관광 진흥과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4	행정3, 시설1
			8급	4	행정2, 행정/임기제 행정1, 행정/시설1
9급	0				
경제 문화국	농수산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5급	1	농업/해양수산1
			6급	4	행정/농업/해양수산1, 농업2, 해양수산1
			7급	9	행정1, 농업3, 시설1, 농업/수의/해양수산1, 수의1, 해양수산1, 시설/해양수산1
			8급	6	행정/농업1, 농업/해양수산1, 해양수산1, 농업1, 시설/해양수산1, 행정/해양수산1
9급	1	행정/농업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행정 지원국	국 합계		116		
	총무과	계		24	
		정무직		1	구청장
		일반직	소계	22	
			3급	1	부이사관1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5, 운전1
			7급	7	행정7
			8급	6	행정3, 행정/임기제 행정1, 운전2
			9급	0	
		별정직	소계	1	
			6급 상당	1	비서1
행정 지원국	주민 자치과	계		13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세무1, 행정/공업1
			7급	5	행정5
			8급	3	행정3
			9급	0	
행정 지원국	회계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공업1
			7급	10	행정6, 행정/시설1, 공업2, 운전1
			8급	2	행정1, 행정/운전1
			9급	1	행정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행정 지원국	세무1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5	행정 1, 행정/세무2, 세무2
			7급	5	행정/세무1, 세무4
			8급	4	세무4
		9급	3	행정/세무2, 세무1	
행정 지원국	세무2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4	행정/세무3, 세무1
			7급	5	행정/세무1, 세무4
			8급	5	행정/세무2, 세무3,
		9급	2	행정/세무1, 세무1	
행정 지원국	민원 지적과	계		27	
		일반직	소계	27	
			5급	1	시설1
			6급	5	행정2, 시설3
			7급	8	행정4, 행정/시설1, 시설3
			8급	6	행정2, 시설3, 시설/전산1
		9급	7	행정5, 시설2	
<u>복지</u> <u>교육국</u>	국 합계			76	
	복지 정책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5	행정1, 사회복지4
			8급	5	행정1,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3
			9급	3	행정1, 사회복지2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u>복지</u> <u>교육국</u>	노인 장애인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시설1
			8급	5	행정2, 행정/사회복지1, 행정/시설1, 사회복지1
		9급	3	사회복지3	
<u>복지</u> <u>교육국</u>	가족 정책과	계		25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1, 행정/사회복지2, 사회복지1
			7급	9	행정3, 행정/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 임기제 행정/사회복지2, 사회복지2
			8급	8	행정1, 행정/사회복지5, 행정/사회복지/ 임기제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u>복지</u> <u>교육국</u>	교육 청소년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4	행정3 행정/임기제 행정1
			8급	5	행정3,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공업1	
안전 건설국	국 합계			<u>112</u>	
	안전 총괄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3, 행정/시설1, 행정/방재안전1, 방송통신1
			7급	6	행정1, 행정/시설1, 시설1, 시설/방재안전1, 방송통신2
			8급	<u>6</u>	행정2, 행정/시설1, 시설2, 임기제 방재안전1
			9급	<u>1</u>	행정/방재안전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안전 건설국	건설과	계		30	
		일반직	소계	30	
			5급	1	시설1
			6급	6	행정1, 시설4, 공업1
			7급	9	행정2, 시설6, 전기운영1
			8급	10	행정1, 행정/시설1, 공업/환경1, 시설6, 공업1,
		9급	4	공업2, 시설2	
안전 건설국	도시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시설3, 시설2
			7급	9	행정1, 시설6, 시설/임기제시설2
			8급	5	시설5
		9급	1	시설1	
안전 건설국	교통 행정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7	행정5, 시설1, 운전1
			8급	5	행정5
		9급	1	행정1	
안전 건설국	건축 주택과	계		23	
		일반직	소계	23	
			5급	1	시설1
			6급	5	행정/시설1, 시설4
			7급	9	행정2, 행정/시설1, 시설6
			8급	7	행정/운전1, 시설5, 공업1
		9급	1	행정/시설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u>공원</u> <u>환경국</u>	<u>국 합계</u>		<u>60</u>		
	<u>공원</u> <u>녹지과</u>	계	22		
		일반직	소계	22	
			4급	1	<u>서기관 1</u>
			5급	1	<u>행정/녹지1</u>
			6급	5	<u>행정1, 행정/녹지2, 행정/녹지/시설1, 녹지1</u>
			7급	8	<u>행정1, 행정/녹지1, 녹지5, 농림운영1</u>
			8급	6	<u>행정/녹지1, 녹지3, 녹지/시설2</u>
			9급	1	<u>녹지1</u>
<u>공원</u> <u>환경국</u>	환경 위생과	계	22		
		일반직	소계	22	
			5급	1	<u>행정/보건/환경1</u>
			6급	4	<u>행정/환경1, 보건2, 공업/환경1</u>
			7급	9	<u>행정1, 공업/환경2, 보건4, 환경2</u>
			8급	5	<u>행정/환경1, 공업/환경1, 보건2, 행정/환경/공업1</u>
	9급	3	<u>보건2, 공업/환경1</u>		
<u>공원</u> <u>환경국</u>	자원 순환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u>행정1</u>
			6급	5	<u>행정2, 행정/환경1, 운전2</u>
			7급	3	<u>행정2, 환경1</u>
			8급	7	<u>행정3, 행정/환경1, 행정/운전1, 운전2</u>
	9급	0			

【별표 3】

북구 보건소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보건소	보건 행정과	계	52		
		일반직	소계	28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3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1, 의무/임기제 의무2
			6급	5	행정1, 행정/간호/의료기술1, 보건/의료기술/간호2, 보건진료1
			7급	9	행정1, 보건/의료기술/간호2, 간호3, 보건/약무1, 보건진료1, 약무/간호1
			8급	9	보건1, 의료기술2, <u>간호2</u> , <u>보건/의료기술/간호1</u> , 공업1, 운전2,
			9급	1	보건/의료기술1
	건강 증진과	소계	24		
		일반직	5급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1
			6급	6	보건/의료기술/간호6
			7급	7	보건1, 의료기술2, 간호2, 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8급	10	보건1, 의료기술2, <u>간호3</u> , <u>보건/의료기술/간호2</u> , 보건/임기제 보건2

【별표 4】

북구 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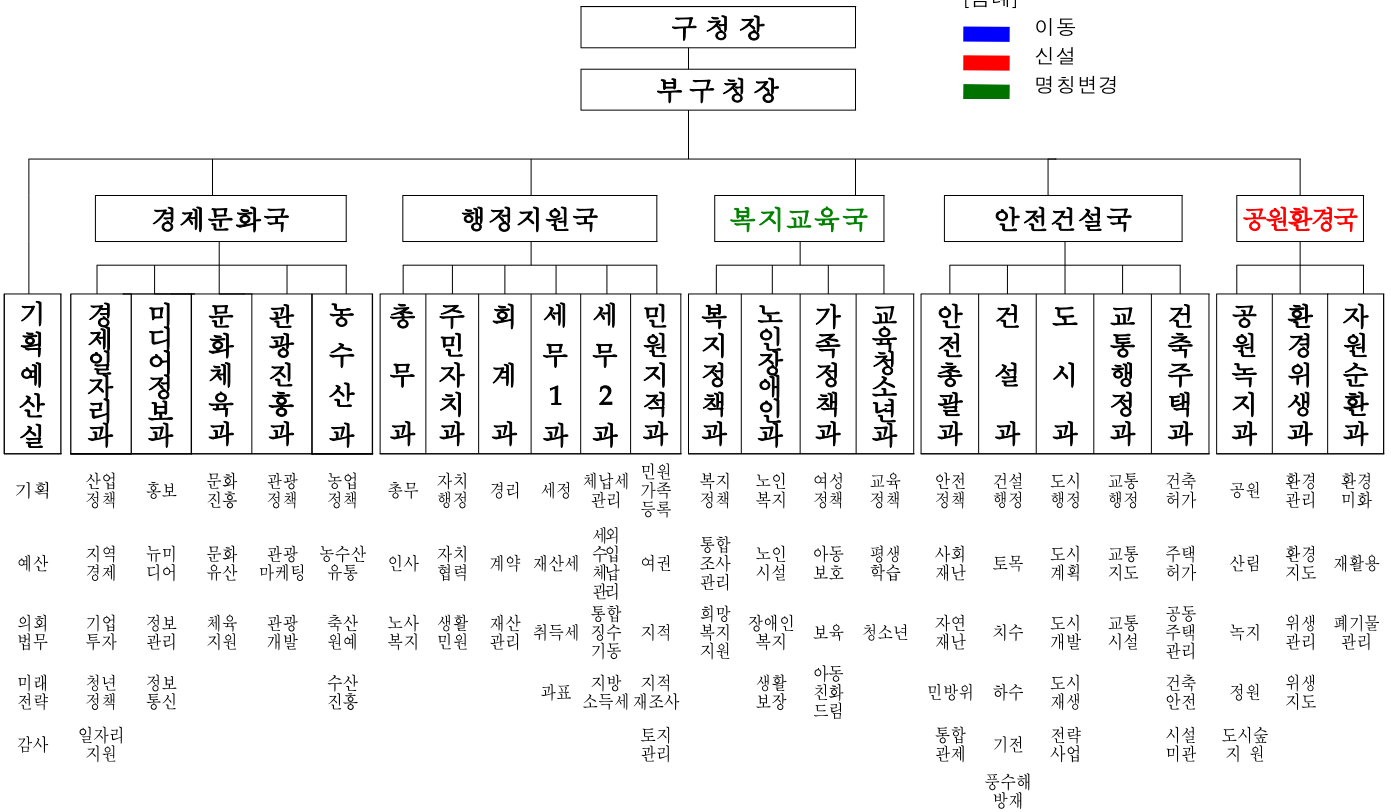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사업소	사업소 합계		36		
	구립 도서관	일반직	소계	27	
			5급	1	행정1
			6급	5	행정1, 행정/사서4
			7급	9	행정1, 사서5, 행정/사서3
			8급	7	사서2, 행정/사서2, 전산1, 공업1, 사서/공업1,
			9급	5	행정1, 행정/사서1, 사서3
	문화예술 회관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 1
			6급	2	행정/공업2
			7급	3	행정1, 행정/임기제 행정2
			8급	3	공업1, 공업/임기제 공업1, 방송통신/임기제 방송통신1
			9급	0	

【별표 6】

북구 기구표(제3조 관련)

기구	국	실·과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5국	1실 23과 96팀	1과 2전문(2팀)	1소 2과(11팀)	2관(7팀)	8동(16팀)
정원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사업소	동
	701	472	20	52	36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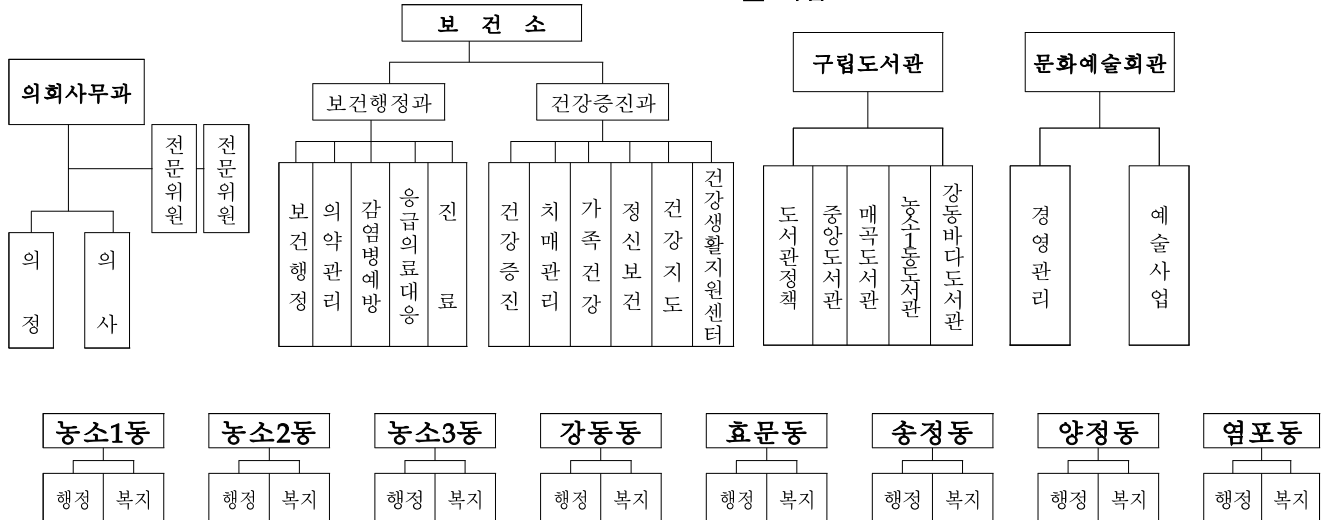
[범례]
■ 이동
■ 신설
■ 명칭변경



□ 의 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행정기구 변경사항 등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 701명(변동없음)

나. 본청 정원 조정(별표 1)

1) 국 신설·명칭 변경 및 소속부서 변경

가) 공원환경국 신설

나) 복지환경국 → 복지교육국

다) 국 소속 부서 조정

(1) 복지교육국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2) 안전건설국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3) 공원환경국 :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2) 직급 및 직렬 조정

가) 관광진흥과

(1) 직렬조정(행정6급 → 행정·시설6급)

나) 안전총괄과

(1) 직렬조정(행정6급 → 행정·방재안전6급,
행정8급 → 행정·방재안전9급)

다) 도시과

(1) 직렬조정(시설6급 → 행정·시설6급)

라) 공원녹지과

(1) 증 1(서기관 1), 감 1(행정·녹지9급 △1)

(2) 직렬조정(행정8급 → 행정·녹지8급)

마) 자원순환과

(1) 직렬조정(운전8급 → 행정·운전8급)

다. 보건소 정원 조정(별표 3)

1) 보건행정과

가) 직렬조정(간호8급 → 보건·의기·간호8급)

2) 건강증진과

가) 직렬조정(간호8급 → 보건·의기·간호8급)

라. 사업소 정원 조정(별표 4)

1) 구립도서관

가) 증 2(사서7급 2), 감 2(사서8급 △1, 사서9급 △1)

마. 복구 기구표 개정(별표 6)

1) 국 신설·국 명칭변경 반영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133호

도시관리계획(연암지구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74호(2024.4.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정비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정정 사유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74호(2024.4.4.)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나, 일부 내용(면적) 기재 착오로 인하여 정정고시 하고자 함.

2. 정정 내용

1. 연암지구

-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I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 기정

구분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합계	7	41,600 (1,412)	1,422,763.8 (22,048.8)	4	40,650 (717)	1,411,975 (14,320)	1	122 (122)	976 (976)	2	828 (573)	9,812.8 (6,752.8)
변경	합계	7	41,395 (1,207)	1,420,713.8 (19,998.8)	4	40,445 (512)	1,409,925 (12,270)	1	122 (122)	976 (976)	2	828 (573)	9,812.8 (6,752.8)
기정	대로	1	40,219 (286)	1,407,665 (10,010)	1	40,219 (286)	1,407,665 (10,010)	-	-	-	-	-	-
기정	중로	1	800 (545)	9,600 (6,540)	-	-	-	-	-	-	1	800 (545)	9,600 (6,540)
기정	소로	5	581 (581)	5,498.8 (5,498.8)	3	431 (431)	4,310 (4,310)	1	122 (122)	976 (976)	1	28 (28)	212.8 (212.8)
변경	소로	5	376 (376)	3,448.8 (3,448.8)	3	226 (226)	2,260 (2,260)	1	122 (122)	976 (976)	1	28 (28)	212.8 (212.8)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연장 및 면적임

■ 변경(정정)

구분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합계	7	41,600 (1,412)	1,422,763.8 (22,048.8)	4	40,650 (717)	1,411,975 (14,320)	1	122 (122)	976 (976)	2	828 (573)	9,812.8 (6,752.8)
변경	합계	7	41,395 (1,207)	1,420,708.8 (19,993.8)	4	40,445 (512)	1,409,920 (12,265)	1	122 (122)	976 (976)	2	828 (573)	9,812.8 (6,752.8)
기정	대로	1	40,219 (286)	1,407,665 (10,010)	1	40,219 (286)	1,407,665 (10,010)	-	-	-	-	-	-
기정	중로	1	800 (545)	9,600 (6,540)	-	-	-	-	-	-	1	800 (545)	9,600 (6,540)
기정	소로	5	581 (581)	5,498.8 (5,498.8)	3	431 (431)	4,310 (4,310)	1	122 (122)	976 (976)	1	28 (28)	212.8 (212.8)
변경	소로	5	376 (376)	3,443.8 (3,443.8)	3	226 (226)	2,255 (2,255)	1	122 (122)	976 (976)	1	28 (28)	212.8 (212.8)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연장 및 면적임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 정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m ²)	
기정	합계		50,414	-	-	50,414	-
변경			52,370	-	-	52,370	
기정	1	3B	1,777	1	연암동 1262-5번지	435	복합시설용지
				2	연암동 1262-6번지	1,342	
기정	1	4B	7,066	1	연암동 1262-7번지	1,667	복합시설용지
				2	연암동 1262-8번지	2,631	
				3	연암동 1262-9번지	1,071	
				4	연암동 1262-10번지	918	
				5	연암동 1262-11번지	338	
					연암동 1262-12번지	441	
기정	1	5B	4,461	1	연암동 1263-8번지	124	복합시설용지
				2	연암동 1263-9번지	1,072	
				3	연암동 1263-10번지	831	
				4	연암동 1263-11번지	426	
				5	연암동 1263-12번지	1,055	
				6	연암동 1263-13번지	953	
변경	1	3B	15,260	1	연암동 1262-5번지	434	복합시설용지
				2	연암동 1262-6번지	1,340	
				3	연암동 1262-37번지	295	
				4	연암동 1262-38번지	829	
				5	연암동 1262-7번지	1,674	
				6	연암동 1262-8번지	2,625	
				7	연암동 1262-9번지	1,077	
				8	연암동 1262-9번지	924	
				9	연암동 1262-9번지	784	
				10	연암동 1262-35번지	135	
				11	연암동 1262-26번지	54	
				12	연암동 1262-28번지	48	
				13	연암동 1262-29번지	18	
				14	연암동 1262-30번지	57	
				15	연암동 1269-13번지	508	
				16	연암동 1263-8번지	123	
				17	연암동 1263-9번지	1,072	
				18	연암동 1263-10번지	829	
				19	연암동 1263-11번지	426	
				20	연암동 1263-12번지	1,055	
				21	연암동 1263-13번지	953	

3. 기타 금회 정정고시 내용 이외의 부분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74호 (2024.4.4.) 「도시관리계획(연암지구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과 동일함(계제생략)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도시과(☎052-241-7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 135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76-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시행자

- 1) 사업의 명칭: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2) 사업주체
 - 가) 성 명: (주)무궁화신탁 대표자 권준명
 - 나) 주 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3)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76-4번지 일원

류별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 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 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 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 선 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기정	1	379	5,812.3	-	-	-	2	303	4,860.3	1	76	952
	변경	1	379	5,750.0	-	-	-	2	303	4,802.9	1	76	947.1
중로	기정	2	336	5,434.5	-	-	-	1	260	4,482.5	1	76	952
	변경	2	336	5,347.0	-	-	-	1	260	4,399.9	1	76	947.1
소로	기정	1	43	377.8	-	-	-	1	43	377.8	-	-	-
	변경	1	43	403.0	-	-	-	1	43	403.0	-	-	-

가.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1	1B-1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2개소)	중로 2-577호선변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게재생략

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13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507-4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나. 명칭 : 도시계획시설(송정지구 주차장 용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507-4번지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결정현황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257	주차장	-	화봉동 1507-4번지	1,543.0	'15.07.02. 울고145호

나. 토지조서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단 위	면 적	편입면적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507-4	주	m ²	1,543.0	1,543.0
계					1,543.0

다. 건물조서

개 요	주차전용 건축물		합계 (m ²)
	주차장 (m ²)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m ²)	
면 적	352.8	149.4	502.2

라. 시설물조서

동 별	건 축 면 적			비 고
	주차장 (m ²)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 (m ²)	합계(m ²)	
1동(지상 1층)	176.4	-	176.4	
2동(지상 1층)	176.4	-	176.4	
3동(지상 1층)	-	149.4	149.4	
계	352.8	149.4	502.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식회사 한가람 대표자 배수빈

나.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깨목4길 15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24.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번호	지번 (화봉동)	지목	대장 면적 (㎡)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부지(㎡)	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1507-4	주	1,543.0	1,543.0	1,543.0	(주)한가람	울산 울주군 서생면 깨목4길 15	(주)경남은 행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근저당, 지상권
계			1,543	1,543	1,543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137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장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오치골3길 16		
점용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광역시 복구 대안동 44-9번지 (일시: 104㎡, 영구: 3㎡) 울산광역시 복구 대안동 산368-11번지 (일시: 418㎡, 영구: 20.8㎡) 울산광역시 복구 대안동 산368-1번지 (일시: 5㎡, 영구: 0㎡) 	하천의 명칭	대안천
점용 내용	상수관로 매설	점용 면적	일시: 527㎡, 영구: 23.8㎡
점용 기간	일시: 2024. 6. 24. ~ 3개월간 영구: 2024. 6. 24. ~ 2099.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943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경동이앤에스		
주소	울산광역시 *구 장**로 3**		
점용 위치	○ 염포동 224-2번지 일원 (현대자동차5공장 앞)	노선명	○ 대2-1
점용 목적	○ 수소배관 밸브 교체	점용 면적	○ L = 2m ○ A(일시) = 8m ²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956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6. 26. ~ 2024. 7. 11. (15일)
3.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연번	위반건축물 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원)
1	울산광역시 복구 천곡동 579-2번지 외 1필지	이수*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2,198,000원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건축주택과 ☎052-241-8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공고 제2024 - 6호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시행 '24. 5. 1.)에 따라 독서소외인 및 모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 제3조)
-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운영(안 제11조)
- 책 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 조항 삭제
- 그 밖에 용어의 띄어쓰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
 - (현행) 독서문화 진흥 → (개정) 독서 문화 진흥

3. 근거법규

- 「독서문화진흥법」 제1조~제3조, 제5조~제6조, 제9조, 제12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립도서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우 44244/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중앙도서관

(전화번호 : 052-241-7402, 팩스번호 : 052-241-7409)

6. 참고사항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검토의견 (의견 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 문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국민의 독서활동 육성 및 권장에 관한 사항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
 2.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개최
 3. 작은도서관(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 포함) 및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독서 문화 진흥행사 개최 지원
 4. 연령별 ·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5.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 전개
 6. 직장파 지역의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및 구민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을 배부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상·재정상의 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독서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상·재정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4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본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연도별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2024년도 당초예산 기준, 구립도서관 9개관의 독서문화진흥행사 운영비 5년치 평균 예산액은 45,800천원 정도로 연평균 예상비용 5천만원 미만
-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행사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기념품 등 구입비로써 기 편성된 예산 내에서 집행 예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구립도서관 사서7급 이필경(241-7402)

현행 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추진 과제
2. 장애인, 노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독서문화 진흥) 구청장은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3. 5. 24>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2. 작은도서관(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 포함)의 독서문화 행사 지원
3. “울산 북구의 책”을 선정하여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전개
4. 북스타트 등 나이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개정 13. 5. 24>
5.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
6. 직장과 지역에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

제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책 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

다.

②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3. 12. 28.>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구청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울산 복구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신설 13. 5. 2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